

2025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5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김 포 시 장

1. 사업목적 :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에 대해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 사업기간 : 2025. 2. ~ 12.
- 사업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 구입비 지원
- 사업규모 : 총 372,000천원 (도비 55,800천원, 시비 130,200천원, 자부담 186,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 기종별 한도(부속기 포함)

(단위 : 천원/대)

지원기종	총 계	지 원 비			자부담 (50%)
		보조금 계	도비 (15%)	시비 (35%)	
보행관리기	3,000	1,500	450	1,050	1,500
승용관리기	10,000	5,000	1,500	3,500	5,000
소형트랙터	10,000	5,000	1,500	3,500	5,000
동력운반차	10,000	5,000	1,500	3,500	5,000
고소작업차	10,000	5,000	1,500	3,500	5,000
전동전지가위	2,000	1,000	300	700	1,000
전동분무기	300	150	45	105	150
농산물작업대	600	300	90	210	300

- ※ 모든 기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 원칙
- ※ 소형트랙터의 경우 영농면적 5,000㎡ 이상 또는 시설하우스 1,000㎡ 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하며, 45마력 이하 규격 지원
- ※ 고소작업차의 경우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 전동(전기) 구동방식 규격 지원

3. 신청기간 : 2025. 2. 3.(월)~ 2. 21.(금) 18:00까지 [3주간]

4.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사업대상자

가. 필수조건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24. 1. 1. 이전 거주)
- 김포시 농지(1,000㎡ 이상)를 소유(또는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우선 지원 대상 [각 항목당 배점]

- '25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이행한 농업경영체 [15점]
- 경영주가 고령인 농업경영체(만 65세 이상) [10점]
- 경영주가 여성인 농업경영체 [10점]
- 경영주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경영체 [10점]
- 경영주가 청년인 농업경영체(만 15세 ~ 49세 이하) [10점]
- 경영주가 귀농한 농업경영체 [10점]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24년도에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한 경영체)
-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점]

※ 지원품목에 따라 최근 1~5년 이내에 해당 사업 기수혜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불가)

※ 순위 내 동점일 경우 농지 면적이 적은 소농 우선

6. 제출서류

- '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신청 농기계 관련 견적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확인 및 귀농인 요건 확인용으로 주민번호 전체공개 및 경기도 전입일자 공개 필수)

-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계획서(서식 2) 1부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장애증명서,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계획서 등]

7. 사업대상자 필수 이행사항

- 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금지
 - ※ 중요재산 범위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적용

(단위 : 년)

지원금액	사후관리 기간	지원 제한기간	중요재산 대상기기
500만원 이상	5	5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30만원 ~ 500만원	3	3	보행관리기, 농산물작업대
30만원 이하	-	1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 기타 지원금액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 위 사업으로 지원받은 모든 농기계·장비는 아래 표지판을 부착할 것

본 (기계·장비명)는 경기도와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계·장비입니다.

- 사업명 :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자 : ○○○
- 사업비 : ○○○천원(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25. ○. ~ 2025. ○.
2025년 ○○월 ○○일

경기도지사 . 김포시장



- * 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재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
- * 부착위치 : 농기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 * 표지판 부착이 어려운 전동전지가위 및 전동분무기는 스티커로 대체가능

8.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 031-5186-4279)

[서식 2]

마을별 공동사용·관리 계획서

사업자 현황

마을명		대표자명 (이장 등)	
주 소(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FAX

마을 현황

농가수		호	마을인구수	
여성농업인	명		고령농업인 (만65세이상)	명
영농규모	밭작물(노지 m ² , 하우스 m ²) 기타(m ²)		주요 재배 농산물	(구체적 작성)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 보유 여부	○, X (참고: m ²)			

구입계획

지원 농기계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공동사용·관리 계획

공동사용농작업	
관리(보관)장소	
관리주체(관리자)	
구입자금 조달계획	(마을 기금 이용, 개인 기부 계획 등)
기 타	수리, 관리(인력계획) 등